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3월 27일, 윤준병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6.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7.29.)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6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7.29.) 상정, 소위심사보
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준병 의원)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후변화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어 농가경영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 시에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가격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 상승 시에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확대로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켜 사실상 농가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기후위기 고물가시대, 소비자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이 국민경제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수급계획 수립 및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도록 하고,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가격이 농산물 기준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상승하거나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 수매 농산물의 판매 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대상 품목별 농산물의 해당 연도 총생산량이 같은 연도 총소비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격안정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수급조절위원회 설치

첫째,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산물수급조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이는 현재 법률상의 근거 없이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의하여 설치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위원구성이나 심의기능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77)”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

해당 의안은 지난 2025년 3월 20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된 바 있는데, 향후 법안심사에 있어서는 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개정안은 ②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수산물수급조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본래 해양수산부에는 수산물의 수급관리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가 있었는데, 해당 위원회는 2023년 10월 법률개정을 통하여 폐지되고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능’만을 수행하는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대체된 바 있음.

개정안에 따라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수산물의 수급관리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심의위원회가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한 차례 폐지되었으나 다시 설치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폐지된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를 대체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능을 수행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와, 개정안에 따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 사이에는 역할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계약생산 이행에 대한 지원 및 손실 보전

산지농협 등 생산자단체는 농산물 생산자와의 계약생산을 통하여 농산물을 확보하고, 이를 식품공장 등 농산물 수요자와의 계약출하를 통하여 출하함.

그런데 계약시점과 인도·출하시점이 다른 특성상, 작황부진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된 출하 물량을 확보할 수 없어 생산물량과는 별도로 구입하여 충당하게 될 수 있고, 시장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계약가격과의 차액이 발생하게 됨.

이로 인하여 계약생산을 이행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생산자에게는 손실이 나타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 불이행의 가능성도 있음.

이에 개정안은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생산자를 대상으로 ① 작황부진이나 시장가격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②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이나 우대를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계약생산의 안정적 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 중 성실한 이행에 대한 지원 또는 우대 조항의 경우, 유인 제공을 통하여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손실 보전의 경우 사인 간의 계약에서 나타나는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려는 정책적인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 법률체계에서 특정한 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는 경우는, 대체로 보전하는 자의 원인행위로 인하여 보전받는 자가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현행법 제12조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손실보전 역시 그러함.

그런데 개정안은 국가의 원인행위에 따른 손실 보전이 아니라, 계약생산을 장려하고 계약의 이행을 촉진하려는 등 정책적인 목적의 손실 보전에 해당함.

계약생산은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나, 계약생산의 원활한 정착을 통하여 농산물 수급조절이라는 공공성이 달성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촉진할 필요성은 있어 보임.

즉, 계약생산에 따른 손실이 국가의 원인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국가에게 일정한 보전의무 또는 당위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닐 것이나,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이와 같은 손실 보전을 장려 및 촉진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임.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손실 보전을 통한 계약생산 장려 및 촉진의 입법정책적 필요성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다.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신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가격 안정지원’ 사업에서 일부 품목에 대하여 수급조절 의무 이행에 동참함을 전제로, 일부 재원의 자부담 하에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을 운영함.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나 시장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수입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감소분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 제도를 운영함.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한 농산물 품목을 대상으로, 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한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는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준가격과의 차액을 지급함으로써

생산자의 수입을 안정화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기존의 유사 제도와는 농가에게 자부담액, 수급조절 참여의무 등이 없다는 차이가 있음.

개정안은 대상 품목의 생산자에게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간의 차액을 지급하려는 것이므로, 제도 운영에 따른 재정 소요가 있을 것임.

이와 같은 가격안정(보장)제도에 대하여 2023년에 ‘한국농업경제학회’에서 대상품목을 ① 배추, ② 무, ③ 고추, ④ 마늘 및 ⑤ 양파의 5개 농산물로 하여, 제도의 적용 물량 및 기준가격 설정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정한 바 있음.

첫째, 전면시행(모든 물량 적용) 시 기준가격 설정 방식이 ① 생산비 보전이라면 611억원, ② 생산비·유통비 보전이라면 7,245억원, ③ 평년가격 기준이라면 1조 1,006억원의 재정소요가 추정됨.

둘째, 50% 물량에 대하여 시행 시 기준가격 설정 방식이 ① 생산비 보전이라면 305억원, ② 생산비·유통비 보전이라면 3,632억원, ③ 평년가격 기준이라면 5,503억원의 재정소요가 추정됨.

이는 2023년 추정 자료라는 점, 추정액일 뿐 실제 소요액은 아니라는 점 등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액을 검토하는 데 있어 참고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개정안은 대상 품목 중 적용 물량에 대해서, 기준연도에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므로, 100% 물량의 전면시행까지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은 기존 유사 제도와 차이점이 있고,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므로, 제도 운영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의 필요성 측면과 이에 따른 영향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라. 수입비축사업의 사후관리

개정안은 수입비축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 제도로 구성됨.

첫째, 안 제13조의2제1항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훈령에 따라 위탁사업자인 aT로 하여금 매년 3월말까지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

참고로, 현행 훈령은 ‘국영무역 품목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① 국영무역 품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② 그 외 품목에 대한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은 ‘국영무역 품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 포함사항을 국영무역 품목으로 축소·한정함.

이에 따라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aT가 수립하는 계획에서 국영무역 외에 수입권공매나 실수요자배정 방식 등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사항이 제외될 수 있어 보임.

둘째, 안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판매실적 보고, 점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일련의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 피드백(Feedback) 구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는 ① aT로부터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연도 판매실적을 aT에 보고하고, ② aT는 보고받은 실적을 토대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또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aT에 통보하여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수입비축사업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비축사업이 농산물의 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은 현행법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훈령 등 실제 제도의 시행상 모습을 바탕으로 관리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현행법의 규정과 일부 대응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개정안은 ‘수입비축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님.

비축사업의 법적 근거인 현행법 제13조에서는 비축용 농산물의 확보 방식을 수매·수입 등으로 구분하고는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비축사업의 유형을 수매비축사업과 수입비축사업으로 구분하지는 않음.

현재 실무적으로 비축사업의 유형을 이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훈령인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의 사업 구분에 따른 것임.

따라서, 법률상에서 ‘수입비축사업’이라는 용어를 활용하기 위하여는, ‘농산물을 수입하여 비축하는 사업(이하 “수입비축사업”이라 한다)’와 같이 먼저 ‘수입비축사업’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개정안은 관리대상 품목을 수입비축사업 중 국영무역 방식으로 수입된 품목으로만 한정하는데, 현행법은 비축용 농산물을 수입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만 규정할 뿐, 그 수입 방식을 규정하지는 않음.

현재 aT가 수입비축사업을 국영무역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개정안과 같이 관리 대상을 국영무역 방식으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만약 방식을 한정하지 않는다면, ① 방식에 관한 문언을 삭제하거나, ② 현행 훈령과 같이 ‘국영무역 등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